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6가단517733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3. C

4. D

변론 종결2017. 3. 10.

판결 선고2017. 4. 14.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49,346원 및 그 중 45,797,876원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9. 24.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16. 2. 23. 접수 제171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6.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50,653,32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원고에게 50,653,32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1. 12. 28. 피고 A과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2. 28. (차후 보증원금 45,000,000원, 보증기한 2016. 4. 28.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 6.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처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피고 A은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6. 2. 6. 이후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6. 3. 8.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였다.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2016. 7. 8. 우리은행에게 45,797,876원(대출원금 45,000,000원 + 이자 797,8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181,230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970,240원이다.

나. 피고 A 및 B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 A은 2016. 2. 23. 피고 A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형인 피고 C 명의로 2016. 2. 23.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접수 제17136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4. 6. 25. 복사골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피고 B은 2016. 2. 23.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6. 2. 2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16. 3. 17. 피고 C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복사골신용협동조합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직후, 피고 B은 동생인 피고 D 명의로 2016. 3.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과 B의 재산상태

1) 2016. 2. 3. 당시 피고 A은 시가 212,000,000원 상당의 제1부동산을, 피고 B은 시가 137,000,000원 상당의 제2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피고들은 제1, 2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2016. 2. 3.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한 46,949,346원의 구상금채무, 우리은행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7,196,000원의 대출금 채무, KB국민카드에 대한 8,286,000원의 채무, 우리카드에 대한 6,217,000원의 채무, 삼성카드에 대한 4,823,000원의 채무, 삼성생명에 대한 9,000,000원의 채무, 피고 C에 대한 1억 3,000만 원의 채무, 피고 D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 등이 있었다. 같은 무렵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46,949,346원의 구상금채무, 복사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7,000만 원과 139,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현대캐피탈에 대한 6,003,000원의 채무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복사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6,949,346원(대위변제금 45,797,876원 + 추가보증료 181,230원 + 법적절차비용 970,240원) 및 그 중 45,797,876원에 대하여는 위 대위변제일인 2016. 7.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6. 9. 24.까지 약정연체이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6. 2. 23.과 2016. 3. 10. 무렵에는 원고의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2011. 12. 28.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6. 2. 6. 이자연체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6. 3. 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무렵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16. 7. 8. 우리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 및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제1, 2부동산을 여러 채권자들 중 한 명인 피고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B이 제2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매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를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채무자인 A, B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나 그 후 이루어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및 복사골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5. 복사골신용협동조합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2016. 3. 17.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70,155,193원이었는데, 그 전액이 복사골신용협동조합에 변제되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제2부동산의 2016. 10. 31. 당시의 시가는 13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의 시가도 위 시가와 같은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인 138,000,000원에서 복사골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67,844,807원이 되는데, 이는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변론종결일까지의 채권액 50,653,327원 [46,949,346원 + 45,797,876원에 대한 2016. 7. 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3. 10.까지의 연 12%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3,703,981원 (=45,797,876×246/365×0.12)]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제2부동산에 관한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2.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B과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50,653,327원 범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0,653,32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문혜정

별지